

## < 정 오 표 (1) >

**1. 정정대상 투자신탁**

- 유리코리아성장&배당증권투자신탁[주식]

**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7.14**

**3. 주요 정정사항 :**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김승태→추연식, 2016.07.14 변경)
- 자본시장법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

**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추연식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<u>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(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.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Ⅱ. [1] 투자전략 4.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추연식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 < 정 오 표 (2) >

**1. 정정대상 투자신탁**

- 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(주식)

**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7.14**

**3. 주요 정정사항 :**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김승태→전승진, 2016.07.14 변경)
- 자본시장법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

**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전승진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<u>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(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</u> 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II. [1] 투자전략 4.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전승진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 < 정 오 표 (3)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7.14

3. 주요 정정사항 :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김승태→추연식, 2016.07.14 변경)

**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추연식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Ⅱ. [1] 투자전략 4.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추연식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 < 정 오 표 (4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고배당&공모주3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7.1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김승태→전승진, 2016.07.14 변경)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- 자본시장법 등 개정사항 반영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3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~나. (생략) 다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~마. (생략)	3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~나. (생략) 다. <u>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</u>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~마. (생략)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 ② (생략) <신 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단서 삭제> 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전승진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기	나. 투자제한	나. 투자제한

구의 투자대상	<p>3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~나. (생략)</p> <p>다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라~마. (생략)</p>	<p>3.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~나. (생략)</p> <p>다. <u>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</u>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라~마. (생략)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u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&lt;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&gt; <u>2016년 7월 14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 <p>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

항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(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---	--	--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Ⅱ. [1] 투자전략 4.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전승진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 < 정 오 표 (5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국민의선택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7.1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김승태→추연식, 2016.07.14 변경)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- 자본시장법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<u>국가가 발행한 채권</u>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	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<u>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/u>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<u>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</u>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</p>

	<p>분배한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 &lt;신 설&gt;</p>	<p>분배한다. &lt;단서 삭제&gt;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<u>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</p> <p>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<u>매매이익</u></p>
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<p>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<u>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p>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<u>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**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</li> <li>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</li> </ul>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</li> <li>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추연식</li> <li>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li> </ul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<p>나. 투자제한</p> <p>(2) 동일종목 투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</li> </ul>	<p>나. 투자제한</p> <p>(2) 동일종목 투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</li> </ul>

	<p>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[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<u>국가가 발행한 채권</u>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	<p>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[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<u>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/u>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<u>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</u>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u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&lt;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&gt; 2016년 7월 14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</p>

		<p><u>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p>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 <p>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그러나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: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</li> <li>-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: 우편으로 발송</li> </ul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 <p>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,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<u>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와 동일합니다.</u>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</p>	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<u>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u>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 <p>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,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</u></p>

	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	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 공시</p> <p>- (생략)</p> <p>-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</p> <p>- (생략)</p>	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 공시</p> <p>- (현행과 동일)</p> <p>-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,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</p> <p>- (현행과 동일)</p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p>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- <u>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</u></p>	<p>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(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- <u>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</u></p>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<p>II. [1] 투자전략</p> <p>4.운용전문인력</p>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p>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</p> <p>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</p>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p>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</p> <p>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추연식</p> <p>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

## < 정 오 표 (6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슈프림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7.1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김승태→추연식, 2016.07.14 변경)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자본시장법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

#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추연식 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u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	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<u>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(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.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

#### [간이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Ⅱ. [1] 투자전략 4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승태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추연식

		-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